

이상용 선생님 「클로저 민법총칙 기본서」  
2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① (2023-01-31)

추후 발견되는 오탈자, 오답, 수정사항 등도 신속히 업데이트 헤드릴 예정입니다.

p.108

기존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판례</b>    단속법규 판례</p> <p>① [1]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<u>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.</u></p> <p>[2]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<u>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.</u>(대판 1993.1.26. 92다39112).</p>
수정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판례</b>    단속법규 판례</p> <p>① [1]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 <u>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.</u></p> <p>[2]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<u>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.</u>(대판 1993.1.26. 92다39112).</p>

p.214

기존	<p><b>제158조 【연령의 계산점】</b>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.</p>
수정	<p><b>제158조 【나이의 계산과 표시】</b>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 <b>[전문개정 2022. 12. 27.] [시행일: 2023. 6. 28.]</b></p>